

의안 번호	2283	[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 30.(목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7.(월)

2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유관기관 명칭 변경 사항과 위원회 위원 임기 등을 명시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유관기관 명칭 변경(안 제2조제2항제3호, 제6호)
 - 육군 제7765부대 제4대대장 ⇒ 제7765부대 3대대장
 - 구군 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 ⇒ 국군 제353방첩부대장
- 위원회 위원 임기 명시(안 제2조제3항)
-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

4. 근거법규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

5. 검토의견

-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「통합방위법」

-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시·도 협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 <개정 2013. 3. 22.>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- 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 협의회에 한한다. <개정 2024. 1. 16.>
1.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(이하 “취약지역”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 2. 통합방위 대비책
 3.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 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
 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
 6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

- 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 2.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 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지역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④ 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(이하 “지역실무위원회” 라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 12. 24.>

1. 지역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3.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24.>